

개인투자조합 관리 및 운영

이상학 고벤처포럼 부회장

1. GP의 보고 의무

- 반기 보고(정기보고)
- 결산 보고

2.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 발급

- 한국엔젤투자협회 시스템과 VICS시스템 연계
-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

3. 투자 기업 발굴/투자/회수

- 엔젤투자자(GP) 경쟁력
- 성공적인 개인투자조합 운영

1. GP의 보고의무

■ 개인투자조합 보고

○ 보고 근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제72조(보고와 검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제47조(보고와 검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 보고의 예외)
-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등)

○ 위탁 근거 (보고관련 업무를 한국엔젤투자협회에 위탁)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6조(권한의 위임·위탁)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권한의 위탁 등)

1. GP의 보고의무

■ 보고 의무 (VICS시스템 메뉴 [1329])

보고	보고 기간	보고 내용
반기 보고	○상반기보고: 7월1일~7월31일까지 ○하반기보고: 1월1일~1월31일까지	○투자 또는 회수내역 - 투자기업, 투자금액 등
결산 보고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내 (1월1일~3월31일까지)	○ (원칙)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의 감사의견서 첨부한 결산서 제출 ○ (예외) 아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 없이 (서식)자금운용현황(다운로드) 로 갈음해 결산서 제출 가능 - 사업연도 투자실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 - 결성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조합으로 출자금 총액이 2억원 이하인 조합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개인 회계사 불가)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7호에 따른 감사반

1. GP의 보고의무

■ 보고 의무 (VICS시스템 메뉴 [1329] [1340])

보고	보고 방법
반기 보고	○ VICS '[1313]투자기업등록'에 투자기업 전산 등록 ○ VICS '[1319]투자유형 관리'에 자원 및 투자유형 등록 ○ VICS '[1320]투자거래 관리'에 투자/회수 관한 세부내역 등록 ○ VICS '[1329]보고 검증 및 확정'에 검증
결산 보고	○ VICS '[1340]개인투자조합 결산보고'에 결산서류 첨부해 보고

○ 결산보고 시 첨부파일

- 원칙: 결산서 제출(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 첨부)
- 예외: 자금운용현황 제출
- 예외 조건: 전년도 투자실적(투자기업, 투자금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
조합출자금 총액이 2억원 이하이고 결성 후 3년 이내인 조합

1. GP의 보고의무

■ 보고 의무 (VICS시스템 메뉴 [1329] [1340])

< 개인투자조합 사업 결산보고 안내 >

보고기한	보고내용	보고대상	미보고시 처분내용
2025. 3.31. (월)	결산서 (감사인의 감사의견서 첨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1) 출자금 총액(약정기준)이 2억원을 초과하고 전년도 투자실적(투자 기업과 투자금액)변동이 있는 조합 2) 출자[제목 없음]이 2억원 이하이나 결성후 3년('22.1.1 이후 결성)이 지나고 전년도 투자실적의 변동이 있는 조합	아래의 대상에 대해 각각 처분 및 과태료 300만원 부과 1) 조합 : 경고 또는 시정명령 2) GP : 경고 또는 시정명령
	자금운용현황 (약식 보고) * 양식불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1) 출자금 총액이 2억원 이하이고 결성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조합 (투자실적 변동은 무관) 2) 출자금 총액과 관계없이 투자실적 변동이 없는 조합	

※ 보고방법 :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VICS)에 결산서 또는 자금운용현황 제출

1. GP의 보고의무

■ 보고 의무 (VICS시스템 메뉴 [1329] [1340])

< 개인투자조합 정기보고 안내 >

구 분	보고기간	보고내용	보고방법
'24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보고	'25.1.1. ~ 1.31.	반기별 투자 및 회수 운영상황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보고 필수)	벤처투자종합 정보시스템 (VICS)에 업무 운영상황 입력 작성 (붙임 참조)
'25년 상반기 업무 운영상황 보고	'25.7.1. ~ 7.31.		

2.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 발급

■ 엔젤투자 세제지원 제도 개요

□ 소득공제

개인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공(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의 신주,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무담보교환사채를 인수

* 3년간 보유 의무 있음

○ (투자대상기업 자격요건) 투자 시점이 아닌 공제 신청 시(투자 3년내) 적격성 판단.

○ (소득공제율)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에서

① 개인이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경우 -> 출자금액의 10% 공제

②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경우

-> 금액 구간별 30~100% 공제

○ (양도세 비과세)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창업 5년 이내 또는 벤처 전환 3년 이내)에 투자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상장 이후 매각.

2.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 발급

□ 투자확인서 발급을 위한 조건

○ 피투자기업: 벤처기업 확인 필수(투자 전 또는 투자 이후)

-> 투자 시 벤처기업 확인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투자 이후 투자유치형 벤처기업 확인 이후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 발급 신청 가능.

○ GP는 한국엔젤투자협회(엔젤투자지원센터) 회원가입 필수(<http://www.kban.or.kr>)이며, VICS시스템에 조합원정보 포트폴리오 투자정보를 최신으로 수정되어 있어야 함. GP가 개인인 경우 개인회원으로, 법인인 경우 기관회원(액셀러레이터 등)으로 회원가입.

① VICS시스템과 한국엔젤투자협회(엔젤투자지원센터)의 정보 동일 시 조합 연결 자동 진행.

② 조합이 여러 개일 경우 조합마다 최초 1회 연결 필요.

③ VICS시스템의 등록 데이터(투자기업 등록 [1313], 투자거래 관리 [1319], 투자거래 관리 [1320])를 사용하며, 약 3시간 마다 데이터 연계 진행.

2.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 발급

□ 투자확인서 발급을 위한 조건

○ 투자확인서 신청 시 구비서류

- ① 투자확인서 발급요청 공문(양식: 다운로드)
- ② 피투자기업의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③ 공증된 이사회/주총 회의록 사본
- ④ 벤처기업확인서
- ⑤ 조합 통장사본/투자금 납입 영수증
- ⑥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양식: 다운로드)(실사인 또는 날인)

2.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 발급

□ 기타

① 투자일자 기준:

- 주식인수(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자본금 증자 ‘변경일’)
- 사채인수(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발행일’)
- 예비기업(당해 기업의 ‘최초 법인등기일’)

② 벤처기업이 아니었던 투자기업이 투자일(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변경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안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경우 투자확인서 발급이 가능함.

③ 조특법 제16조 및 조특법 시행령 제14조 3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결성 후 3개년이 지난 투자 소득공제 불가 조합 설립 최종 승인 일 기준 다음 년도 12월31일 까지 투자 건에 한해 소득 공제 신청 가능.

예) 조합 승인 2024년 12월15일 경우 2025년 12월31일 이내 투자 건에 한해 소득 공제 신청가능.

2.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 발급

□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

- ① 소득공제 변경 신청 시 투자일로 부터 2년간 공제년도 변경 가능(3개 년도 중 택일 가능).
-> 투자연도, 투자연도+1, 투자연도+2 까지 신청 가능
- ② 투자확인서 신청 시 공제 시기 변경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 이후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 버튼 클릭하여 시기변경 신청 가능. 단. 변경 신청 중에는 투자확인서 출력할 수 없음.
- ③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 및 양식을 출력 또는 다운로드 받아 해당 조합원 서명하여 업로드.
-> 시스템에 입력한 공제시기와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서에 기입된 내용이 일치하여야 함.
- ④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자 발급요건 검토 후 '변경신청승인'완료 후 투자확인서 출력.

2.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 발급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출자자 (투자자)	① 성 명 이상학		② 생년월일 1962년 09월 12일					
	③ 주 소 서울 용산구 장문로141 105동601호(한남동, 한남힐스테이트) (☎ : 010-5443-4009)							
제출처	[]원천징수 의무자 []납세자조합	④ 법인명(상호)						
		⑤ 대표자(성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소재지(주소)						
	[]세무서장	⑧ 주소지관할서 세무서장						
투자조합관리자등		⑨ 법인명(상호) 스파크개인투자조합4호 (☎ : 010-5443-4009)						
출자(투자)금액명세								
출자(투자)내역								
벤처기업투자내역								
⑩ 출자일 (투자일)	⑪ 투자 구분	⑫ 조합명 (위탁회사명) 또는 투자신탁명	⑬ 계좌 번호	⑭ 출자 총액	⑮ 출자금액 (투자금액)	⑯ 투자일 (과세연도)	⑰ 투자기업명 (사업자번호)	⑱ 투자금액 (단위 : 원)
2023.0 7.06	벤처 등	스파크개인투자 조합4호	국민은 행 026401 042972 03	430,00 0,000	20,000,000	2024.12.14 (2024)	디오랩스 (528-86-02626)	99,997,000
						2024.01.20 (2024)	오디엔 (586-87-02518)	100,002,500
						2024.11.24 (2024)	크래블 (102-81-45812)	100,000,000
계				430,00 0,000	20,000,000	계		299,999,50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자(투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01월 08일

확인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 발급

투자확인서 발급 시스템

로그아웃



서비스 안내

상세 보기



투자확인서 FAQ

상세 보기



투자 확인서

신청 현황

투자확인서 발급신청

투자확인서 발급 담당자

※투자확인서 발급에 대한 문의는 [기업] 본사 소재지의 관할 담당자 [조합] 조합 소재지의 관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소득공제/추징 관련은 국세청 상담센터(126, 인터넷상담센터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관할구역	신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개인 직접투자자	서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정현	02) 2110-6360	02) 2110-0661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경기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권민지	031) 201-6975	031) 201-698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투자기업 소재지 관할	대전, 세종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정원	042) 865-6143	042) 865-6139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충남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송윤섭	041) 415-0635	041) 415-2856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

2.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 발급

온라인 신청 매뉴얼

- [엔젤투자 세제지원제도 개요](#)
- [투자확인서 발급시스템 매뉴얼\(조합\)](#)
- [투자확인서 발급시스템 매뉴얼\(기업\)](#)

신청관련서류 서식

- [투자확인서 발급요청 공문\(기업\)](#)
- [투자확인서 발급요청 공문\(조합\)](#)
- [투자자명세표](#)
- [연구 및 인력개발비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공제시기 변경신청서 서식은 변경신청화면에서 양식출력을 통해 다운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안내

구분	진행상황	설명	비고
신규신청	신청중	투자확인서 신청을 위해 신청자가 내용을 입력하고 있는 상태	모든 데이터 수정가능
	신청완료	투자확인서 신청이 완료 된 상태	투자자 연락처, 주소만 수정가능
	접수	투자확인서 발급 담당자가 신청건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	
	발급승인	투자확인서가 승인되어 출력이 가능한 상태	

2.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 발급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① 공동이용의 목적(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는 사무):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업무

②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1 종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표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동의 ☐ 부동의 ☐

③ 이용기관의 명칭: (지방)중소벤처기업부

본인은 이 건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또는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민원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동 사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번호	T0046020	
조합	조합선택 *결성한 조합이 나오지 않는 경우, VICS 시스템에서 데이터 연계가 안된것이니 VICS 전산실(02-2156-2470,7480)로 연락하셔서 데이터의 연계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 연계이나 일부 누락 발생시)	
출자총액(원)	*조합 선택시 자동 입력됩니다.	
납세고유번호	*조합 선택시 자동 입력됩니다.	
GP명	이상학	

2.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 발급

투자확인서 발급 시스템

서비스 안내 투자확인서 FAQ 투자 확인서 | 로그아웃

신청현황 조회 (총 : 13 건)

신청

신청취소

변경신청취소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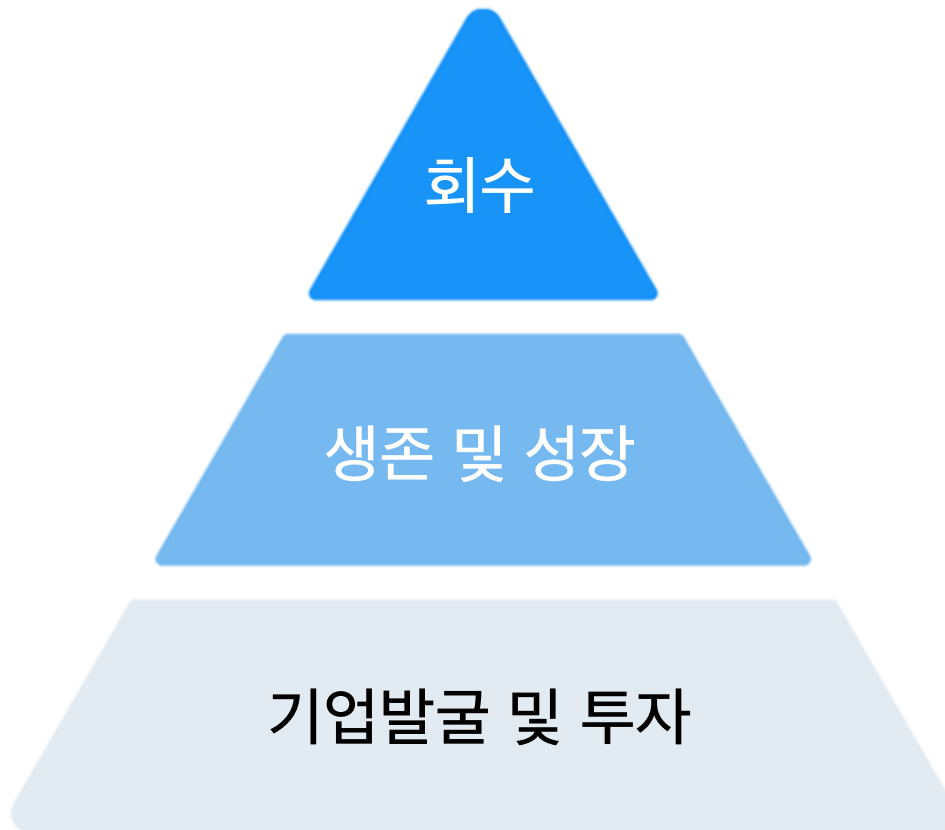
※ 신청번호를 클릭하면 상세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안내

선택	신청번호	조합명	신청일	발급일	반려일	반려사유	편당구분	진행상황
☐	T0043256	스파크개인투자조합4호	2024-12-31	2025-01-09	2025-01-06		일반	출력완료 출력
☐	T0037266	스파크개인투자조합3호	2024-01-29	2024-01-30	2024-01-30		일반	출력완료 출력
☐	T0036120	스파크개인투자조합4호	2024-01-22	2024-01-23	2024-01-23		일반	출력완료 출력
☐	T0035922	고벤처개인투자조합6호	2024-01-16	2024-01-23	2024-01-22		일반	출력완료 출력
☐	T0028401	스파크개인투자조합3호	2023-01-18	2023-01-20			일반	출력완료 출력
☐	T0028400	고벤처개인투자조합3호	2023-01-18	2023-01-20			일반	출력완료 출력
☐	T0028395	고벤처개인투자조합4호	2023-01-18	2023-01-20			일반	출력완료 출력
☐	T0028056	고벤처개인투자조합5호	2023-01-17	2023-01-20	2023-01-19		일반	출력완료 출력
☐	T0020965	스파크 개인투자조합 2호	2022-01-19		2022-01-23	1. 조특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서 개인투자조합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투자한 건에 대해서만 투자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일반	반려
☐	T0018444	고벤처 개인투자조합 1호	2021-12-31	2022-01-18	2022-01-03		일반	출력완료 출력

3. 투자 기업 발굴/투자/회수

▣ 투자기업 발굴



분산 투자 vs 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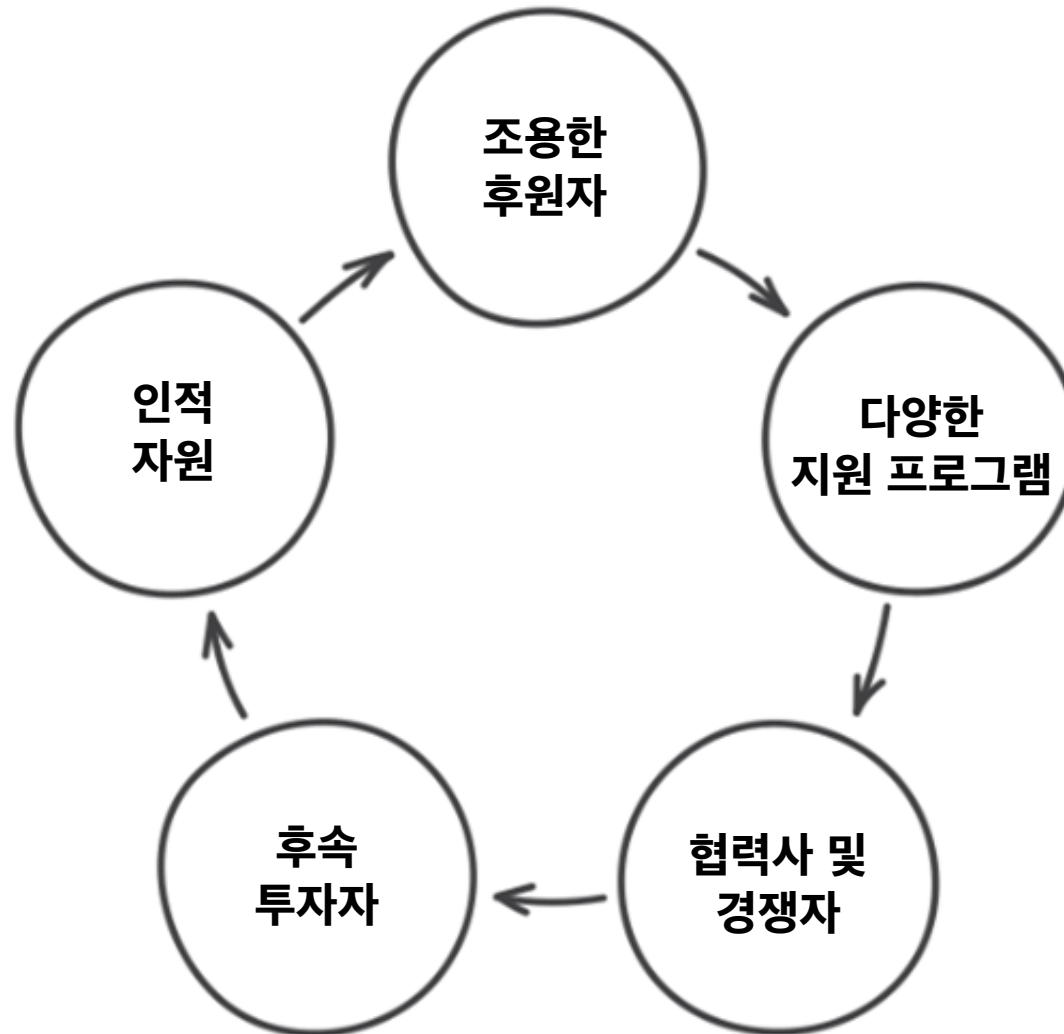
다양한 변수/Timing



**스타트업들과 점점
팀 빌딩/문제해결 능력/기업가 정신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업 검증**

3. 투자 기업 발굴/투자/회수

▣ 피투자 기업 육성 방안



3. 투자 기업 발굴/투자/회수

▣ 분산투자를 통한 회수전략



개인투자
VS
개인투자조합

3. 투자 기업 발굴/투자/회수

■ 엔젤투자자(GP)의 경쟁력(I)

- ☞ 소득공제 vs 수익 (개인투자조합 결성의 연속성)
- ☞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시행착오 경험
- ☞ 스타트업 투자 이후 회수 경험
- ☞ 창업 생태계 트렌드 변화에 대한 이해 (과거 vs 현재)
- ☞ 스타트업 소싱 및 평가를 위한 실효적인 네트워크

3. 투자 기업 발굴/투자/회수

▣ 엔젤투자자(GP)의 경쟁력(I)

☞ 개인투자조합: 4,393개, 28,000억원(2025년 1월 현재)

☞ TIPS 운영사: 125개

☞ 액셀러레이터: 463개(2024년 6월 현재)

☞ 벤처투자조합: 2,133개, 600,000억원(2024년 11월 현재)
250개, 51,000억원(2024년 신규 결성)

3. 투자 기업 발굴/투자/회수

▣ 초기 스타트업 투자의 특징

☞ High Risk, High Retu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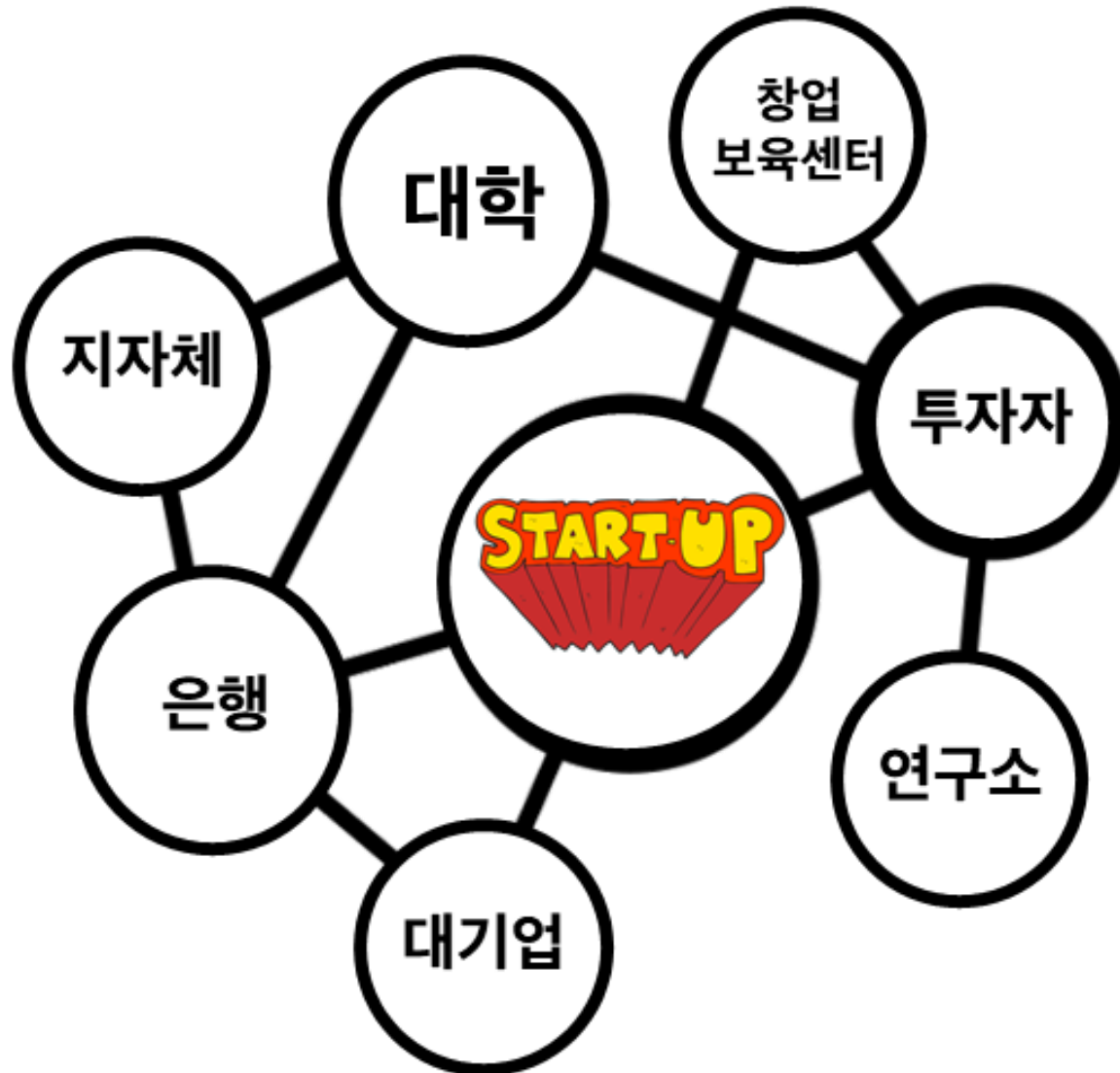
☞ 다양한 변수 (생전 전략 vs 성장 전략)

☞ 낮은 회수 가능성

☞ 투자 철학(시행착오)

3. 투자 기업 발굴/투자/회수

▣ 엔젤투자자(GP)의 경쟁력 강화 방안



감사합니다.